##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162 발의연월일: 2022. 4. 8.

발 의 자:이종성・이종배・박대수

정운천 · 김승수 · 김상훈

성일종 • 정우택 • 정진석

구자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, 유치원의 유아, 초·중·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.

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·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임.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 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 애인(2.8명)이 비장애인(0.6명)에 비해 4.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). 법률 제 호

###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의 장"을 "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소방교육・훈련) ① (생	제17조(소방교육·훈련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	2
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	
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	
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	
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	
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	
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	,
이 경우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	
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<u>어린이</u>	<u>어린이</u>
집 · 유치원 · 학교의 장과 교육	집・유치원・학교의 장 또는
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	장애인복지시설의 장
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
	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
	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